



의료보험GUIDE

(XIII)

의료보험 진료비 산정에 따른 참고 사례등을 계속적으로 수록할 예정이오니 회원여러분의 많은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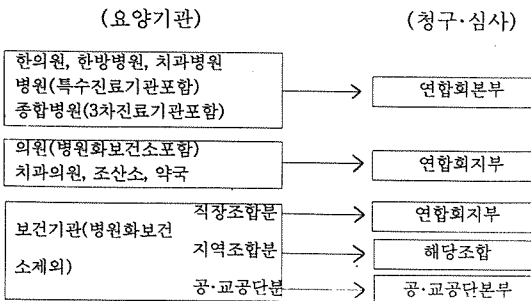
진료비청구 · 심사와 급여사후관리

'89.7.1 전국민의료보험 실시와 함께 보건기관을 포함한 모든 요양기관의 진료비청구창구를 의료보험연합회(지부)로 일원화하고 지역조합의 3차진료기관 및 특수진료기관 진료분은 직장조합과 동일하게 의료보험연합회에 예약·지급되 나머지 각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 지급토록 조치한바, 그 결과 진료비지급창구의 다원화로 조합의 지급업무가 폭

주하고, 요양기관의 진료비수입 관리업무가 복잡하며 조합별, 요양기관별, 체불진료비 현황 파악이 곤란한등 현행 지역조합별 진료비 지급방식이 의료보험제도 정착및 발전에 기여도가 낮아 진료비 청구 및 지급절차를 '90.4.1부터 다음과 같이 개선 시행한다.

1. 진료비청구 및 심사

○ 진료비청구 및 명세서등(이하 '청구명세서'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의료보험연합회 본부·지부 또는 해당 보험자에게 청구하여 심사한다.



○ 각 요양기관에서는 청구명세서를 각 보험자별(직장조합분, 지역조합분, 공·교공단분)로 구분, 분철하여 청구하되 지역조합분에 한하여는 다음과 같이 한다.

- 의원(병원화보건소 포함), 치과의원, 조산소 및 약국에서는 각 지역조합별로 분철하여 의료보험연합회 관할지부에 청구함.

다만, 서울특별시 및 5개 직할시(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에 소재하는 지역조합의 청구명세서는 별도 조치가 있을때까지 종전과 같이 청구함.

- 모든 보건기관(병원화보건소 제외)에서는 청구명세서를 각 조합별로 분철하여 해당 지역조합에 직접 청구함.

○진료비 심사기관은 심사결과를 당해 요양기관 및 보험자에게 통보한다.

○보건기관의 청구명세서는 직장조합분은 의료보험연합회 지부에서 심사하고 지역조합및 공·교공단분은 해당 보험자가 각각 심사한다. 다만, 병원화보건소의 청구명세서는 의원급과 같이 모두 의료보험연합회 관할지부에서 심사한다.

-지역조합및 공·교공단은 자체에서 직접 심사 지급한 보건기관의 매분기별 심사지급 실적을 다음 분기 첫째달 말일까지 의료보험연합회에 제출하여야함.

○사업장 부속의료기관을 요양기관으로 지정한 직장조합은 진료비청구지급계약에 따라 직접 청구 또는 연합회 청구분으로 구분한 진료비심사 지급 실적(연합회에 청구·심사된 분도 포함)을 다음 분기 첫째달 말일까지 의료보험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진료비 예탁 및 지급

○직장조합및 지역조합은 조합별로 전 3개월간의 심사결정 월평균액 4분의 3에서 정산잔액을 제외한 금액을 의료보험연합회에 매월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다만, 도시지역조합은 매월 17일까지 납부)

○직장조합및 지역조합의 진료비지급은 의료보험연합회가 청구명세서의 접수및 심사완료순에 따라 각 보험자의 예탁금 보유 한도내에서 지급한다.

○요양기관인 사업장 부속의료기관의 진료비는 계약내용에 따라 해당 직장조합이 지급하거나 의료보험연합회에서 지급한다.

○공·교공단의 진료비는 연합회의 심사·지급내역 통보에 따라 공·교공단에서 지급한다.

○보건기관(병원화보건소 제외)의 진료비는 심사 완료한 해당보험자가 지급한다. 다만, 직장조합분의 진료비는 종전과 같이 의료보험연합회가 지급한다.

○진료비 예탁지급및 정산절차 등에 대한 세부규정은 의료보험연합회가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진료비 지급체계

구분	진료비지급
지역조합	연합회본부 다만, 병원화 보건소를 제외한 보건기관의 진료비는 해당조합
직장조합	연합회본부
공·교공단	공·교공단본부

※농·어촌지역조합 진료비 지급업무의 변경시행시기는 추후 별도 시행할 예정임.

3. 진료비 심사수수료

○진료비 심사수수료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승인한 별도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가 부담한다. 다만, '90년도 1/4분기에 의료보험연합회 지부에서 심사한 지역조합의 보건기관 진료비 심사수수료는 감면한다.

4. 청구명세서의 보관 및 사후관리

○직장조합분의 청구명세서는 의료보험연합회에서 보관관리하고 공·교공단분의 청구명세서는 심사 후 공·교공단에 송부하여 보관관리한다.(종전과 같음)

○의료보험연합회 본부에서 심사한 지역조합의 청구명세서는 의료보험연합회 에서 보관관리한다. (한의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병원, 종합병원)

○의료보험연합회 지부에서 심사한 지역조합의 의원(병원화보건소 포함), 치과의원, 조산소, 약국의 청구명세서는 심사후 각 해당 지역조합에 송부하여 보관관리한다. 다만, 서울특별시및 5개 직할시에 소재하는 지역조합의 청구명세서는 별도조치가 있을 때까지 종전과 같이 의료보험연합회에서 보관관리한다.

○지역조합및 공·교공단의 보건기관 청구명세서는 각 보험자가 보관관리하나 직장조합의 보건기관 청구명세서는 종전과 같이 의료보험연합회에서 보관관리한다.

○요양기관인 사업장 부속의료기관의 청구명세서는 의료기관의 종별및 청구방법의 계약내용에 따라 해당 직장조합 또는 의료보험연합회에서 보관관리한다.

참조: 보건사회부급여31510-1503호('90.2.6)및 급여

5. 급여 사후관리

의료보험연합회 지부에서 지역조합의 의원(병원 화보전소 포함), 치과의원, 조산소, 약국의 청구명세서를 심사후 각 해당 지역조합으로 송부하여 보관 관리토록한 근본취지는 지역조합별로 자신의 조합원들이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 또는 분만급여를 받

은 구체적인 내용인 진료비명세서를 보관관리하여 합리적이고도 실효성있는 급여 사후관리를 실시하므로써 사회적 공공비용인 보험재정의 부당한 누수를 방지하고 적절한 급여사후관리가 이루어지게 하기위함이며 이를 위하여 본회에서는 조합지원 업무중 급여사후관리용 업무처리지침과 진료비명세서 판독요령, 보건기관 심사지급 전산처리 업무요령등 책자를 제작하여 5월중 지역조합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 S.S. White 코리아社 設立

세계적 「바」(Bur) 생산 메이커인 에스에스화이트(SS white)社가 국내현지법인 「주식회사 에스에스화이트코리아」를 설립했다.

세계적인 Bur전문생산메이커로서 자본금 8천만원으로 설립된 「에스에스화이트코리아」는 대표이사 사장에 吳東鉉씨, 회장에 「리차드 T. 하버리」씨 이사에 「아키우쓰이」씨가 각각 취임했다.

지난 1일 힐튼호텔에서 열린 「에스에스화이트코리아」설립 축하연에서 吳東鉉사장은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시장은 물론 동남아 진출에 진력하겠다』고 밝히고 머지않아 Bur생산공장도 설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락처는 779-1681~2〉



〈사진은 회사설립 축하연을 마치고 회장 Richard T. Harvery씨와 吳東鉉사장이 굳은 악수를 교환하고 있다.〉